



제39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830호)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3860호)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823호)

2022.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지 민

목 차

I. 홍기원의원 대표발의(2111830)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철도종사자의 흡연금지(안 제40조의3 및 제82조제4항제1호 신설)	2
II. 진성준의원 대표발의(2113860)	13
1. 제안경위	13
2. 제안이유	13
3. 주요내용	14
4. 검토의견	15
가. 철도안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15
나. 철도안전경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19
다. 철도종사자의 피로 관리(안 제23조의2 신설)	31
※ 참고자료: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현황	37

Ⅲ. 서범수의원 대표발의(2114823)	38
1. 제안경위	3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8
3. 검토의견	39
가. 노면전차에 대한 철도보호지구 적용 범위 조정(안 제45조) ..	39
※ 참고자료: 시·도별 노면전차 사업추진 현황	47

I. 홍기원의원 대표발의(2111830)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홍기원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1. 7. 30.

다. 회 부 일 : 2021. 8.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여객이 열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과 달리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은 화재발생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등).

3. 검토의견

가.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안 제40조의3 및 제82조제4항제1호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82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1. 2. (생략) ⑤ · ⑥ (생략)	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철도종사자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2) 국토교통부 의견

대규모 운송수단인 열차에서 흡연으로 인한 화재발생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함. 운전실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항공안전법 등 타법 사례를 고려할 때 철도종사자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흡연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여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를 통한 흡연 규제의 이행력 확보는 적절함.

3) 검토의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¹⁾ 및 제34조제3항²⁾에 따르면,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열차³⁾는 동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서 누구든지 열차 내 흡연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 13. (생략)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 26. (생략)

⑤ ~ ⑦ (생략)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생략)

2)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⑤ (생략)

3)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 제47조4), 제82조제4항5) 및 제50조제4호6)에서는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흡연 등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지 및 퇴거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녹화 또는 촬영

③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5)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 ⑤·⑥ (생략)

6)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위탁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반면,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흡연 금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철도종사자가 열차 내 흡연을 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임. 이에 개정안은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여객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열차 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여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40조의3은 열차 내 흡연 금지의무 적용 대상을 철도종사자⁷⁾로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종사자에는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과 같이 주로 열차에 탑승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자 외에 관제업무 종사자, 작업책임자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

7)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는 자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열차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누구든지 열차 내 흡연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흡연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철도종사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또한, 이를 고려할 때 철도종사자의 범위에 현행 제21조⁸⁾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하는 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항공안전법」 제57조의2⁹⁾에서도 항공기 내 흡연이 금지되는 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¹⁰⁾ 외에 동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항공종사자¹¹⁾ 및 객실승무원이고, 항공기 내

8) 「철도안전법」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9) 「항공안전법」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운항승무원”이란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흡연이 금지되는 항공종사자의 범위에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금지 요건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안전법」 제57조의2의 규정과 같이¹²⁾ 철도업무와 관계없이 여객으로 열차에 탑승하여 흡연을 하는 경우 적용 법 규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행 제47조제1항제4호¹³⁾에 따른 여객의 흡연금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둘째,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여객과 동일한 수준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업무종사자·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는 여객의 흡연 등 금지행위에 대해 여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여객에 비해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며, 운송 관련 유사 입법례를 보면, 항공종사자·버스 운수종사자가 흡연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외에 자격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¹⁴⁾ 등을 고려할 때, 철도종사자의 흡연행위에 대

11)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20.11.18, p.5

13)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흡연하는 행위

14)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내에서

해 여객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 조치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만약 철도종사자의 책무를 고려하여 여객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려는 경우 철도종사자 중 자격을 요하는 운전업무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사유¹⁵⁾에 흡연 금지 의무위반을 포함하거나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과태료 금액(100만원 이하)은 항공을 제외하면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흡연행위에 대해 철도종사자를 여객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흡연을 한 경우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에서는 흡연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효력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15) 「철도안전법」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2.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 5의2.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② ~ ⑥ (생략)

참고로, 운송 분야 흡연 관련 규정 현황을 보면, 「항공안전법」¹⁶⁾ 및 「항공보안법」¹⁷⁾에서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기 승객에 대해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 1천만원 이하(주기 중 또는 계류 중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⁸⁾

16) 「항공안전법」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안전법」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17)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7. (생략)

②~⑨ (생략)

제50조(벌칙) ①~⑥ (생략)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⑨ (생략)

18)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¹⁹⁾ 및 여객²⁰⁾의 준수 사항으로 흡연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의 의무

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6. 9., 2020. 12. 8., 2021. 5. 18.>

1~15. (생략)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16~31. (생략)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삭제 <2014. 1. 28.>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 ⑤ (생략)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

위반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²¹⁾ 여객의 금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흡연 등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의 위반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²⁾

그 밖에 여객선 등 해상운송사업의 경우 근거법령에 흡연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49조의8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④ (생략)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략)

【 운송수단별 흡연 관련 제재규정 】

분야	여객	종사자
항공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60~180일 자격정지*
철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버스·택시 등	금지규정은 있으나 과태료 등 제재규정 없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버스운수종사자 :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자격 취소**
해운	흡연 관련 규정 없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 (운항 중인 경우) 1차위반: 60일, 2차위반: 120일, 3차위반: 18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 (버스운전자격)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택시운전자격) 흡연금지위반 관련 별도의 제재규정 없음

Ⅱ. 진성준의원 대표발의(2113860)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1. 12. 10.

다. 회 부 일 : 2021. 12. 11.

2. 제안이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철도종사자를 주로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 철도안전 실현의 주체로서 철도종사자가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철도안전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 경험을 반영하여 철도안전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안전정책 수립과정에서 철도이용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종사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안전관리체계에 철도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도종사자가 실질적인 안전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철도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 철도안전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철도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유지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안 제6조의4 신설).

다. 철도운영자등은 근무시간 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철도종사자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철도안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 철도안전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철도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6조의3(철도안전위원회) ① 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철도안전위원회를 둔다.</u> <u>1. 제5조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u> <u>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철도안전정책 수립과 철도안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주요정책을 다루는 ‘철도산업위원회’와의 중복 문제, 대표성을 띤 종사자 특정 문제, 이해관계 충돌 우려 등이 상존함. 무인화·자동화 등 안전 관련 신기술 도입 시 전문·기술적 검토가 아닌 직종별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등 중립성 저해 우려가 있음. 또한, 안전 관련 타법 사례를 볼 때,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종사자가 참여하는 상설 위원회를 규정한 사례는 없음.

나) 행정안전부

법안의 ‘철도안전위원회’ 및 ‘철도안전경영위원회’는 철도안전에 관한 정책에 대해 협의 및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기 설치된 자문위원회인 ‘철도산업위원회’의 기능과 유사·중복되므로,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제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활용하고, 필요시 법안 취지에 따라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부산교통공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 및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을 심의·조정하

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를 철도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므로 철도안전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중복 소지가 있음.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위원회 구성에 철도시설관리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고, 철도종사자는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에 소속된 직원으로 철도운영자 등과 동일한 지위라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음.

3) 검토의견

개정안은 철도운영자²³⁾ 및 철도종사자²⁴⁾ 등 철도안전 관련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철도안전 종합계획²⁵⁾ 및 시행계획²⁶⁾ 등 철도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협의하

23)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4)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도록 하려는 것으로, 철도안전정책의 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²⁷⁾에 따르면, 철도산업에 관한 기

25) 「철도안전법」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6) 「철도안전법」

제6조(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①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등’이 철도산업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의 하나인바, 개정안의 철도안전위원회는 철도산업위원회와 기능 및 업무중복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효율적인 행정조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종사자가 참여하는 상설 위원회를 규정한 안전 관련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나. 철도안전경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철도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유지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 철도종사자 및 철도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된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철도운영자등이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6조의4(철도안전경영위원회) ①철도 <u>운영자등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u> ② 철도안전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u>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u>추진에 관한 사항</u> 2.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u>구축에 관한 사항</u> 3.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u>유지 등에 관한 사항</u> 4.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u>향상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 <u>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철도안전경영위원회는 철도운영 <u>자등, 철도종사자 및 철도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u> ④ 철도운영자등은 <u>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철도안전경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 그 밖에 철도안전경영위원회의 <u>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2)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인 철도운영자등의 경우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철도안전경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철도운영자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철도종사자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한국철도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안전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므로 기능상 역할 중복으로 「철도안전법」에 규정할 실익이 없음.

다) 국가철도공단

철도안전경영위원회 철도종사자 참여 범위를 정하기 위해 철도종사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라) 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하는 기구(철도안전관리체계위원회)를 각 운영기관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므로 신설 효과가 크지 않음. 현재도 사안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위원회,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철도종사자의 의견제시가 가능함.
또한, 지방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
관리 중점기관은 기관장 또는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장,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마) 한국교통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철
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위
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복 우려가 있음. 철도안전 시행계획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의 내용은 철도 이용객 등 국민의 철도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도종사자의 의견과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함.
「철도안전법」에 철도안전경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는 것은 타 법령
과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3) 검토의견

현행 제6조²⁸⁾, 제7조²⁹⁾ 및 제8조³⁰⁾에서는 철도운영자등³¹⁾은 철도운영

28) 「철도안전법」

제6조(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
조에서 같다)은 철도운행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
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안전관리체계’라 함)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4조제2항³²⁾에 따라 철도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 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신고절차 및 고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0) 「철도안전법」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확인 및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확인할 수 있다.

1. 정기검사: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수시검사: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1)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

안전을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해야 하는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음.

개정안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유지,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 철도종사자 및 철도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된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등 철도안전경영에 철도종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철도안전경영위원회는 현재 철도운영자등이 개별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다수 위원회(협의·심의기구)와 유사·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① 관련 규정

현행 제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안전관리 체계 기술기준」³³⁾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 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심의

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3)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1.6.2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에 적합한 안전관리 조직의 규모, 구조 및 인력 구성

나.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심의를 위한 기구 등의 구성

하기 위한 기구 등(이하 ‘안전관리체계위원회’라 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³⁴⁾에 따르면, 사업장의 안전 및 보
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
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
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³⁵⁾에 따른 “공공

34)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
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
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
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
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
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

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³⁶⁾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중점기관³⁷⁾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³⁸⁾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³⁹⁾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⁴⁰⁾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36)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7)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을 위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동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6장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8)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9)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방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0)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보건

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기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장,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⁴¹⁾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②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2021년 10월말 기준으로 현행 제7조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 받은 철도운영자등(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은 총 22개 기관임. 이 중 철도운영자는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공항철도(주) 등 18개, 철도시설관리자는 국가철도공단·가야철도(주) 등 4개 기관임(참고자료: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작은 2개 철도시설관리자를 제외한 대다수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변경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체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동 위원회 구성은 기관별로 상이하나 주로 경영진, 철도안전책임자, 철도안전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위원회 위원에 철도종사자(대표)나 외부전문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을 위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1)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①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기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이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장,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반기마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3개 기관을 제외⁴²⁾한 19개 철도운영자등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하는 동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4개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에스알·인천국제공항공사⁴³⁾)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6개 지방공사(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등)는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경영자, 안전관리책임자,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또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 및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보임.

42) 가야철도(주), 전라선철도(주), 이레일(주) 철도시설관리자 3개 기관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최저 상시근로자수(50명, 100명, 300명)를 산업분류표준에 따른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운수 및 창고업(철도운송업)에 해당하는 철도운영자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철도시설관리자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를 운영(상시종사자 10인)하고 있는데, 철도분야를 포함하여 기관 전체 차원의 안전경영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철도안전경영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현황 】

구분	안전관리체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근거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기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심의사항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 안전목표·안전계획·안전 경영·안전성과 검토 안전관련 현안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위원구성	규정 없음(기관별로 상이)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	근로자, 전문가 등 참여
설치대상	철도운영자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지정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
설치· 운영현황	미 설치 2개 기관 (가야철도·전라선철도) 외 20개 기관	상시근로자 수가 작은 3개 기관(가야철도·전라선철도· 이레일) 제외(19개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10개 기관

③ 검토의견

개정안의 철도안전경영위원회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유지 등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위원회와 목적과 기능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보임. 이에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체계위원회를 철도안전경영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은 철도안전경영위원회에 철도종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철도안전 실현을 위한 주체로서 철도종사자의 의견을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직접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철도종사자의 참여는 철도종사자의 이해와 배치되는 철도안전정책의 추진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철도종사자를 위원 구성에 포함할 경우 대표성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철도안전경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⁴⁴⁾ 수립 시 포함되는 사항이고,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수립·추진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심의가 가능하다는 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경영위원회와 기능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44) 「철도안전법」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한편,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작아 안전관리체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의 경우도 개정안에 따른 철도안전경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철도종사자의 피로 관리(안 제23조의2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철도운영자등이 근무시간 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철도종사자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철도종사자의 근무시간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3조의2(철도종사자의 피로관리) ① 철도운영자등은 근무시간 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철도종사자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u> <u>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 해당 철도종사자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제한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2)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가) 국토교통부

철도종사자의 피로 관리를 비롯한 근무 환경의 개선 등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항임. 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최근 개정·시행되었으므로 추가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나) 한국철도공사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과 중복되며, 「철도안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통해 근무시간 및 승무시간 제한, 휴양시간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승무업무 종사자에 대한 피로를 관리하고 있음.

나) 국가철도공단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3) 검토의견

개정안은 철도운영자등이 근무시간을 제한하거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철도종사자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철도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⁴⁵⁾에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669조⁴⁶⁾에서 장시간 근로·야간작

45)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차량운전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항공안전법」 제56조⁴⁷⁾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승무시간 및 근로시간의 제한이나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운용을 통해 소속 승무원(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로관리 대상을 동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⁴⁸⁾ 중 운항승무원⁴⁹⁾과 운항관리사 및 동법

47)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들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들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충분한 주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로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경험과 과학적 원리 및 지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8)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⁵⁰⁾으로 한정하고 있고, 피로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해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⁵¹⁾ 하도록 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항공안전법」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도 불구하고 승

-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49)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운항승무원”이란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0)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1) 「항공안전법」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6. (생략)
1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19. ~ 49. (생략)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8.>

1.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3. ~ 14. (생략)
- ② ~ ⑥ (생략)

무원 등의 피로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거리 비행업무 등으로 고도의 주의력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승객 안전책임에 대한 정신적 압박이 과중한 해당 직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됨.⁵²⁾

개정안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모든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제한 및 근무환경 개선 등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준하는 방식으로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경우 철도종사자 중 피로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직군으로 피로관리 대상을 한정하는 등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52) 참고로,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가 채택한 부속서 6(Annex 6, 4.10 Fatigue management)에서는 승무원 및 관제사에 대한 피로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참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현황

[21.10 기준]

	기관명	철도구분	운영노선	노선연장(km)	역수(개)	철도종사자수
철도 운 영 자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	경부고속선 등 105개 노선	4,128	646	28,209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부산 1~4호선	115.2	114	3,912
	공항철도(주)	민자철도	공항철도	63.8	14	472
	신분당선, 경기철도	민자철도	신분당선	31	13	423
	(주)SR	국가철도	수서평택고속선	61.1	3	467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서울 1~9호선	312.34	288	16,198
	대구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대구 1~3호선	83.7	91	2,848
	부산-김해경전철(주)	민자철도	부산김해경전철	22.4	21	244
	대전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대전 1호선	20.5	22	668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인천 1~2호선	73.8	68	1,348
	광주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광주1호선	20.5	20	718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민자철도	서울 9호선	27	25	609
	용인경량전철(주)	민자철도	에버라인	18.1	15	247
	인천국제공항공사	도시철도	인천자기 부상철도	6.1	6	10
	우이신설경전철(주)	민자철도	우이신설선	11.4	13	122
	의정부경량전철(주)	민자철도	의정부경전철	10.6	15	133
철도 시 설 관 리 자	김포골드라인	민자철도	김포도시철도	23.6	10	209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	-	-	-	434
	가야철도(주)	민자철도	가야선	20.4	2	4
	전라선철도(주)	민자철도	전라선	34.1	5	5
	이레일(주)	민자철도	서해선(소사-원시)	22	12	6

자료: 국토교통부

Ⅲ. 서범수의원 대표발의(2114823)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서범수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2. 2. 24.

다. 회 부 일 : 2022. 2.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의 선로 및 선로 위의 전차선 등이 훼손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로로부터 일정거리의 범위를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철도보호지구에서 관련 시설이나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노면전차의 경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다른 철도와는 달리 별도의 시설물이 거의 없고 도심지를 통과하여 도로와 인접하여 운행되는 노면전차의 특성상 10미터의 범위에 도로의 각종 건축물이 포함되고 해당 건축물 개·보수시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작업지연으로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여 노면전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3. 검토의견

가. 노면전차에 대한 철도보호지구 적용 범위 조정(안 제45조)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현행 ‘10미터 이내’에서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u>10미터 이내</u>]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 ----- ----- ----- ----- <u>5미터</u> ----- <u>터</u>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2)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가) 국토교통부

노면전차의 보호지구 범위를 5미터로 지정할 경우 도로변 건축물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굴착공사로 인한 도로 침하 등 노면전차 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현행 10미터 규정은 철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30미터에서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6년에 개정되었고, 실제 적용사례가 없으므로 추가 완화는 철도안전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나) 울산광역시

노면전차의 특성상 도심지를 운행하고 타 도시철도(지하철, 모노레일)와 달리 구조물이 없어 과도한 규제에 의한 주민불편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대로 철도보호지구의 행위제한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3) 검토의견

① 현행 규정

현행 제45조⁵³⁾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⁵⁴⁾에 따르면, 철도경계선 즉, 궤

53)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

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노면전차의 경우 10미터 이내)의 지역인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⁵⁵⁾(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4)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5)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 10. 23.>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시행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흠막이공사 시행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4.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시행

하고 있음.56)

한편, 현행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57)의 경우 철도보호지구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철도보호지구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철도시설의 파손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방해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58)으로 정하는 일부 행위(‘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 ‘최대높이

5. 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

6.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8. 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56) 현행 제78조제3항제17호에서는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의무 위반 또는 안전조치 이행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7)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 9. (생략)

58)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최대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기계

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인공구조물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제조·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철도보호지구”는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본다.

10미터 이상인 건설기계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철도보호지구의 행위제한과 마찬가지로 신고의무 및 안전조치등의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주로 도심구간에서 도로에 설치된 노면전차 주행로(선로)를 이용하여 운행되고, 주행속도가 낮아(50km/h 이하) 운전자가 직접 전방 상황을 확인하며 운행이 가능한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노면전차의 경우 기존의 30미터인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10미터로 축소하되, 기존보다 줄어든 20미터 범위의 지역에 대해서는 철도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행위만 제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은 2016년 말 개정⁵⁹⁾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참고로, 2022년 2월 기준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22건의 노면전차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부산 오륙도선 사업' 등 4건은 타당성조사 후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있으나, 완공 후 개통·운행 중인 노면전차가 없어 2016년 말 도입된 현행 규정을 실제 적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참고1: 시·도별 노면전차 사업 추진 현황).

② 개정안의 내용 및 검토의견

개정안은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현행 '10미터

[본조신설 2020. 5. 26.]

5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제14548호, 공포일 2017. 1. 17, 시행일 2018. 1. 17)

이내'에서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노면전차 선로 인근의 각종 건축물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주로 도심구간에서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상 현행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내에 상업·업무·주거시설 등이 위치하여 각종 건축물 등이 행위제한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개·보수 시 복잡한 행정절차⁶⁰⁾에 따른 작업지연 등 불편과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울산광역시)에서도 도심지를 운행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로 인

60)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현행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이유제시와 함께 안전조치등을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 주민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면전차 철도 보호지구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 범위의 조정은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뿐 만아니라 노면전차 안전에 미치는 효과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철도보호지구⁶¹⁾가 선로변의 위험요소로부터 철도안전 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노면전차의 보호지구 범위를 5미터로 할 경우 철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굴착 등 도로변에서의 행위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⁶²⁾ 현행 10미터 규정은 철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30미터에서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6년 말에 개정되었고, 실제 적용사례가 없으므로 추가 완화 여부는 철도 안전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참고로, 노면전차(트램)에 대한 외국의 철도보호지구 설정 및 운영 사

61)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굴착 등 건설공사의 사전 신고제도는 1993년 부산 구포역 인근 선로 변 무단 발파작업으로 선로 지반이 침하되어 해당 지역을 지나던 무궁화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입되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제한은 인근 철도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사례는 없다는 설명임. 또한, 「철도안전법 시행령」에서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에 대한 회신(신고 수리) 기간은 30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철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소요 일수이며, 실제로는 행위신고 이후 회신까지 평균 10.4일('21년 기준)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임.

62) 최근 철도보호지구 내 사고사례로는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09.7.6), 부평역 타워크레인 전도사고('15.9.16) 등이 있음.

례를 보면, 영국은 철도 또는 노면전차의 선로변 공사 전 철도운영자와 협의를 의무화하면서 위험지역은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맨체스터시의 경우, 트램 선로 끝에서 지상부 측면은 3미터(지하부 측면은 2미터) 이내에서 작업할 경우 트램 운영자에게 신고하고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에딘버러시의 경우 트램 선로 끝에서 측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지점은 위험지역(Red Zone)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선로 끝에서 측면으로 10m(건축물이 1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까지) 이내를 주의지역(Amber Zone)으로 정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철도 및 궤도 근접 공사 시행 전에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선로보호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선로 끝에서 5미터 이내(노반보다 공사위치가 높은 경우 +α 적용,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철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공사에 대하여 협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⁶³⁾

문 의 처
02)6788-5575

6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442, 3460) 검토보고서, “트램 건설·운영에 대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방향”, 대한교통학회(2016.12) 참조

참고1

시·도별 노면전차 사업추진 현황

추진 단계	도시	노선명	연장 (km)	비용 (억 원)	진행상황
계(22건)			312.9	95,972	
계획 절차 (5건)	대전	대전2호선	36.6	7,492	▶ 사업계획 수립 중 * 기본계획 승인('20.10)
	서울	위례선	5.4	2,614	▶ 사업계획 수립 중 * 기본계획 승인('20.10)
	부산	오륙도선	1.9	487	▶ 사업계획 수립 중 * 기본계획 승인('20.11)
	경기	동탄도시철도	34.2	9,787	▶ 사업계획 수립 중 * 기본계획 승인('21.8)
	부산	C-Bay Park선 (1-1단계)	1.9	482	▶ 기본계획 수립 중
		C-Bay Park선 (후속사업)	9.1	5,002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17.6).
상위 계획 반영 (17건)	경기 (6건)	성남1호선	10.4	2,382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19.5)/변경('21.7)
		성남2호선	13.7	3,439	
		오이도연결선	6.6	1,761	
		송내-부천선	9.1	2,381	
		수원1호선	6.2	1,764	
		스마트허브노선	16.2	3,666	
	인천 (4건)	인천남부순환선	29.4	17,711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18.12)
		IN-Tram	22.3	5,440	
		영종내부순환선	14.8	4,420	
		송도내부순환선	7.4	1,582	
	부산 (3건)	강서선	21.3	5,241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17.6).
		정관선	12.8	3,755	
		송도선	7.4	3,732	
	울산 (4건)	노선1	11.6	3,059	▶ 타당성재조사('21.3~)
		노선2	13.7	3,940	▶ 예타 진행 중('21.5~)
		노선3	16.9	4,085	▶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20.9)
		노선4	5.9	2,232	

자료: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